

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6-35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: 2026. 4.

제출자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개별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의 위탁사무를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1) 추진근거

-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(평생교육지원)
-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(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)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(운영의 위탁)

2) 필요성

-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문화생활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: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

- 1)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시설 운영, 인력 운용 및 관리 일체
- 2)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시설물, 장비, 물품, 비품 등 관리 일체
- 3) 기타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업 및 운영사무 일체

라. 위탁시설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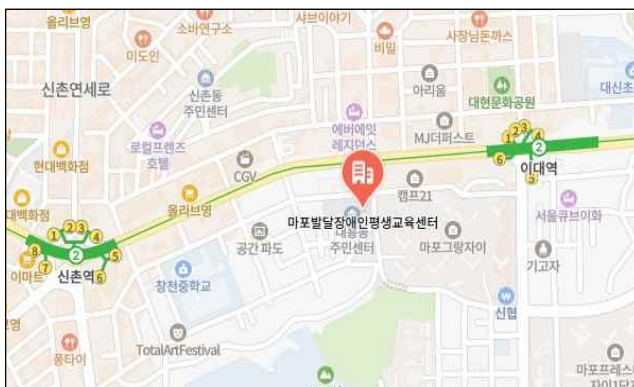
1) 소재지: 마포구 신촌로 26길 10, 대흥실뿌리복지센터 3층

2) 시설현황

- 건물규모: 지하2층/지상5층(지상 3층 사용)
- 면적: 531.4㎡(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시설 전용 면적)
- 층별현황

층별	용도	면적(㎡)
5층	햇살정원(옥상공원), 자원봉사실, 경로식당 사무실, 조리실, 경로식당	703.01
4층	우리마포 데이케어센터, 미술활동실, 건강관리실, 종합상황실, 노인복지 사무실, 관장실, 음악활동실, 기능회복실, 세탁실, 창고, 특별활동실, 정보라운지, 청춘강당	1,407.48
3층	전문상담실, 스튜디오, 프로그램실, 재활체육실, 우리마포장애인주간이용센터, 우리마포보호작업장,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, 부모대기실	1,538.74
2층	프로그램실, 마포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, 해오름작은도서관	1,128.66
1층	강당, 우리마포어린이집, 대흥동주민센터	1,524.45
B1층	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무실, 푸드마켓, 대흥동예비군동대	1,508.77
B2층	주차장	2,398.60

3) 위치도 및 전경



위치도



전경

마. 민간위탁기간: 2026. 12. 20. ~ 2031. 12. 19.(5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에 의거 선정(재위탁)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(2026년 예산 기준)

1) 소요예산: 704,082천원(시비78%:구비22%)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예산액	산 출 내 역	비고
목	세목			
계		704,082		
민간 이전	민간위탁금	704,082	-인건비: 676,026 -운영비: 28,056	시비 78% 구비 22%

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- 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
- 2)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장애인복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

자.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1)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(서울시) 준수하여 민간위탁 진행
- 2) 추진일정안
 -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성과평가 추진: 2026. 6월
 -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재위탁 계획 수립: 2026. 7월
 - 민간위탁 운영신청서 접수: 2026. 7월
 -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(선정): 2026. 8월
 - 위탁 운영 개시: 2026. 12월

3. 참고사항: 관련 법령

[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]

제26조(평생교육 지원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「교육기본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별로 「장애인평생교육법」 제2조제3호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,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,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[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]

제8조(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)

-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,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, 교육 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[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]

제10조(운영의 위탁)

-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되, 연장할 수 있다.
- ③ 그 밖에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[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]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
-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